

붙임1

[투자형R&D] 선정배제 및 취소 기준

① [선정배제 기준] 매칭투자 신청 접수 마감일을 기준하여 최근 2년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R&D매칭펀드 매칭투자 승인을 배제

항 목	세 부 내 용	
매 칭 투 자 신 청 기 업	증자	1. R&D매칭펀드 신청 내역과 증자 내역의 중요한 내용(의사록, 계약서 등의 투자단가, 총투자금액 등)이 상이한 경우
	소송 및 계약위반	2. 매칭투자 신청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기업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자가 회사 운영 관련 사항, 주식 거래 등 회사와 관련 사항에 대하여 민·형사상 피소된 경우 3. 후속 매칭투자 신청의 경우 1차 매칭투자 이후 조합의 사전 동의 미수령 등 중요한 계약위반 건수가 3회 이상이거나, 투자계약서상 위약벌을 청구한 경우
	기업 투명성	4. 매칭투자 신청기업이 당해 기업의 임원·주주·기관투자자 및 그 특수관계인(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과 금전거래, 자산매매거래, 매출매입거래가 있는 경우로서 그 거래의 적정성과 불가피성을 증빙자료로서 소명하지 못한 경우 5. 매칭투자 신청기업이 당해 기업의 임원 또는 주주, 기관투자자 및 그 특수관계인(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이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했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등 법인이나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개인사업자 포함)과 금전거래, 자산매매거래, 매출매입거래가 있는 경우로서 그 거래의 적정성과 불가피성을 증빙자료로서 소명하지 못한 경우 6. 기관투자자, 매칭투자 신청기업, 조합 간 이해상충 문제가 있는 경우 7. 기타 매칭 투자 신청기업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견되는 등 경영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1) 불투명한 자금거래가 확인되고 해당 자금거래의 적정성을 소명하지 못한 경우 2) 신뢰성 있는 재무정보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3) 정부 R&D등 지원 자금을 사용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자료 제출 협조 거부	8. 한국벤처투자가 관련 규정 등에 의거 요구하는 정보를 투자대상기업이 정확하게 제공하지 않는 경우 9. 매칭투자 심사 시 특이사항 등의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는 경우
기타	10. 기타 대표펀드매니저가 매칭투자 신청기업 선정배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 관 투 자 자	증자	1. 매칭투자 신청한 기관투자자의 투자금이 현금이 아닌 경우(현물출자, 채권의 출자 전환 등)
	소송 및 계약위반	2. 기관투자자가 R&D매칭펀드 등 한국벤처투자 관련 민·형사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3. 매칭투자 신청 기관투자자가 조합의 공동매도권 관련 내용을 위반한 경우 4. 후속 매칭투자 신청의 경우 1차 매칭투자 이후 조합의 사전동의 미수령 등 중요한 계약위반 건수가 3회 이상이거나, 주주간 계약서상 위약벌을 청구한 경우

펀드운용 방해 및 부정행위	5. 기관투자자가 부당한 거래요구, 금전 또는 물품 요구 등 투자기업에 대한 부당한 요구를 한 것이 발견된 경우 6. 기관투자자의 부정이 발견되거나 기타 R&D매칭펀드 운용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투자기업과 특수관계	7. 기관투자자가 투자기업 또는 투자기업의 임직원과 특수관계인 경우 또는 기관투자자가 투자기업의 임직원인 경우. 다만, 기관투자자가 무보수 사외이사로 투자기업에 근무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
자료 제출 협조 거부	8. 한국벤처투자가 규정 등에 의거 요구하는 정보를 기관투자자가 정확하게 제공하지 않는 경우
후속투자	9. 기관투자자가 R&D매칭펀드 기 투자기업에 투자하고자 할 시, 투자기업이 R&D매칭펀드 기 투자 금액의 70%이상을 R&D매칭펀드와 체결한 투자계약서 상에 기재한 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기타	10. 기관투자자가 R&D매칭펀드 운영 규정 등에 의해 부과된 제재(매칭제한)를 받고 해당 제재 기한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11. 기타 대표펀드매니저가 매칭투자 신청기업 선정배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선정취소 기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 취소 가능

- 신청서의 기재사항이 허위 또는 의도적인 조작으로 판단되는 경우
- 매칭투자 최종 승인 이후 해당 기업의 중대한 변동(부도, 휴폐업, 대주주 또는 경영진 변동, 영업정지, 중요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처분, 청산, 회생 절차 또는 파산절차의 개시, 기타 유사한 절차의 개시 등)이 있는 경우
- 기관투자자가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사실상 법령 위반상태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최종 선정 후 3개월간 투자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한 경우
- 매칭투자 최종 승인기업이 매칭투자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계약체결 전까지 투자기업의 지분율에 변동이 있는 거래가 발생하였으나, 한국벤처투자에 사전 통보하지 않은 경우
- 기타 대표펀드매니저가 매칭투자 승인 취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③ [제재사항] 매칭투자 최종 승인 후 선정취소 기준에 해당하여 승인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로부터 180일간 R&D매칭펀드 매칭투자 승인을 제한할 수 있음